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13(목) 10:00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60호
- 나. 제출자 :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1. 23.
- 라. 회부일자 : 2025. 1. 23.

2. 제안이유

자치회관 운영 원칙의 적용기준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호)

4.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1조 및 제14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원칙의 적용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4호에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u>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u> 5. (생략)	제3조(운영원칙)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공직 선거법」 제111조에 명시된 의정보고회 및 같은 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예외로 한다.</u> 5. (현행과 같음)

- 현행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서는 의정보고회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제한하고 있으나, 이외의 기간에는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정당이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¹⁾

1)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③「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에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의 원래 목적은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대관 여부는 상위법령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고 있으니 해석에 따라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헌법과 법령, 조례로 체계화된 법질서의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됨.
- 2025. 1. 20 현재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23개 자치구에서 의정보고회는 4개구가 당원집회는 1개구가 단서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붙임2 참조)
- 집행부에서는 대관시 주민자치회관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자치구 자치회관 운영원칙 조례 규정 현황

3. 자치구 조례 조문 세부 내용 1부. 끝.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

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 8. 4., 2014. 1. 17.>

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전문개정 2000. 2. 1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②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③「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2005. 8. 4.>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3. 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 3. 12.>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제목개정 2000. 2. 16.]

【규정 ○, 미규정 ×】

(2025.01.20. 기준)

자 치 구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단서로 아래사항을 예외적으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비 고
		의정보고회	당원집회	
총 계	규정 23개구, 미규정 2개구	규정 4개구	규정 1개구	
강 남 구	×			
강 동 구	○	×	×	금천과 같음
강 북 구	○	○	○	2024.09.27. 개정
강 서 구	×			
관 악 구	○	×	×	금천과 같음
광 진 구	○	×	×	금천과 같음
구 로 구	○	×	×	금천과 같음
금 천 구	○	×	×	
노 원 구	○	×	×	금천과 같음
도 봉 구	○	×	×	금천과 같음
등 대 문 구	○	×	×	금천과 같음
동 작 구	○	×	×	금천과 같음
마 포 구	○	○	×	2015.04.16. 개정
서 대 문 구	○	○	×	2024.10.16. 개정
서 초 구	○	×	×	금천과 같음
성 동 구	○	×	×	금천과 같음
성 북 구	○	×	×	금천과 같음
송 파 구	○	×	×	금천과 같음
양 천 구	○	×	×	금천과 같음
영 등 포 구	○	○	×	2014.04.24. 개정
용 산 구	○	×	×	금천과 같음
은 평 구	○	×	×	금천과 같음
중 로 구	○	×	×	금천과 같음
중 구	○	×	×	금천과 같음
중 량 구	○	×	×	금천과 같음

자치구	세부 내용	비 고
금천구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강동 외 18개구	금천구와 같음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강북구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명시된 의정활동 보고회 및 같은 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 집회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9.27.>	
마포구	제3조(원칙) 제2장에서 정한 자치회관과 제3장에서 정한 주민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	
서대문	제3조(운영원칙)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5. 정치적(의정보고회 제외)·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본조신설 2024. 10. 16.]	
영등포구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의정활동 보고회를 제외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개정 2014.04.24>	
강남구 강서구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규정 자체가 없음	